힘내라 대한민국 / 식품의약품안전처	설 명 자 료	배 포	2020.5.21.(목)
		담 당 과	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
		과 장	박영민 (☎043-719-1745)
		사 무 관	박성관 (☎043-719-1736)

‘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’에 대한 설명

[연합뉴스 5.20.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5월 20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「법원 “식약처,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”」 등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○ 법원이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함

2. 설명 내용

○ 지난 5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판결의 주요 내용은 ’세부내용을 공개하라‘가 아닌 ’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‘는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또한, 이번 판결에서 한국필립모리스가 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25건 중 15건은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, 나머지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‘공개’가 아닌 ‘재처분’하라는 내용으로,

- 이는 기존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(공개, 비공개 등)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- ‘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’는 분석수행자 정보 ‘1건’뿐입니다.